

수원지방법원 2021. 11. 18 선고 2020나7018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1. 11. 18 선고 2020나70182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20. 6. 5 선고 2019가단535095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

담당변호사 신철민, 심보문

피고, 항소인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안

담당변호사 명광재

변론종결 2021. 10. 21.

판결선고 2021. 11. 18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. 6. 5. 선고 2019가단535095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들에게, 가.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5, 6, 7, 8, 13, 14,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“ㄴ” 부분 19㎡를 철거하고, 나. 수원시 팔달구 D 대 264㎡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5, 6, 7, 8, 13, 14,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“ㄴ” 부분 19㎡를 인도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3행의 ‘약 5년’을 ‘약 15년’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광진, 판사 이효진, 판사 이국현

[별지1]

부동산의 표시

수원시 팔달구 F, G, H(Ⅱ) 지상 J호

목조세멘트와즙평가건점포

면적 26평 내

면적 12평 5층 8작. 끝.

[별지2]



